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국 토 교 통 부

힘내라 대한민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1.28~1.29일 강풍·대설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상청에서는 1.28~1.29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태풍급의 강한 바람이 불며 일부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각 기관에서는 시행 중인 건설현장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철저한 대비 및 비상태세를 갖추어 기상특보의 영향에 따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시·도 등 지자체에서는 민간부문 공사장에 대해서도 공사중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공공사) 타워크레인 등 강풍 취약 공종에 대해서는 붙임의 매뉴얼을 고려해 강풍에 철저히 대비하고, 특히 건축·토목 등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는 긴급히 안전과 관련된 작업이 아니면 강풍의 영향을 받는 공종에 대하여 강풍이 불 때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시 작업 중지) ①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나. (민간공사) 민간부문 공사장에도 공사중지 내용 등을 전파하고, 각 현장들이 관련 법령 및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붙임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발췌분) 1부.
2. 고용노동부 풍수해 대비 안전보건매뉴얼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서울지방항공청장, 부산지방항공청장, 제주지방항공청장,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강원도지사, 대전광역시장, 충청북도지사, 울산광역시장, 충청남도지사, 경기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국가철도공단이사장, 한국도로공사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철도공사 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한국공항공사 사장, 대한건설협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주무관	유진욱	시설사무관	안일찬	건설안전과장	전결 2021.1.27. 한명희

협조자

시행 건설안전과-702 (2021. 1. 28.)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563 팩스번호 044-201-5553 / iddirkkk@molit.go.kr / 비공개(5)